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보도의 조화 -경찰수사공보에 대한 FGI조사를 중심으로-

김 병 철*

[국문 요약]

경찰의 수사공보는 주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범죄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형법은 제126조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피의자의 인권보호의 조화로운 관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 근거하에서 경찰수사공보규칙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범죄사건 관련해서 경찰과 언론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상호작용 하에서 범죄보도로까지 이어지는가를 살펴보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FGI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 있는 수사기관의 구성원들과 관계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경찰관 3명, 경찰행정학과 및 법학교수 5명, 경찰출입기자 3명 등을 상대로 그룹별로 나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알 권리를 내세우는 언론의 과도한 경쟁 하에서 경찰관들은 피의사실의 공개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측면이 많아서, 개념과 범위를 명료하게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언론대응창구개선과 기자들과 수사담당자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제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경찰수사, 알권리, 피의사실공표, 경찰수사공보규칙, FGI

* 대구대학교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 Daegu University), E-mail: gyotaja@hanmail.net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피의사실공표의 법적 정당성 및 한계

1. 피의사실공표와 기본권 제한
 - 1) 피의사실공표와 기본권의 충돌
 - 2) 알권리
2. 이익형량 기준 관련 쟁점
 - 1) 이익형량 일반이론적 관점
 - 2) 공적 인물 이론적 관점
 - 3) 범죄의 심각성 별 관점

III. FGI 조사의 의의 및 방법

1. FGI조사의 의의
2. 조사방법 및 참여자 구성
3. 주요 면접내용

IV. FGI 조사의 주요내용분석

1. 수사사건 등의 공보 시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가 되는 문제
2. 경찰수사공보규칙에 있어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
3. 언론과 사건담당자와의 접촉 부분

V. 개선방안

1. 공보의 주체측면
2. 공개심의여부
3. 언론과 수사담당자와의 접촉제한

VI. 결론

I. 문제의 제기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형사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고, 이는 기소 이전 단계의 지위에 있는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문상 ‘재판받을 권리’와 체계상 함께 규정하고 있고 ‘형사피고인’이라는 문언을 고려하면 무죄추정은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증거법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증거법 외에 형사법 전반, 더 나아가 일반법 생활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문재완, 2020: 79). 이처럼 형사피의자에게 무죄추정권이 인정되므로 기소 전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 저촉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해외의 법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53년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의 제정형법논의 당시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이유는 국민의 사생활 등 명예에 관한 인권을 보호하고 여론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¹⁾

하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례는 그 후로 계속 비밀비재하였으며, 이는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 혐의자에 대한 ‘인격살인’에 이르기에도 하였다(임웅, 2017: 893).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시도가 있었다(김재현·임정호, 2019: 37)²⁾.

현재 우리는 대중 매체 등을 통해서 범죄 보도를 쉽게 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노와 두려움을 갖는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하는 언론의 보도권을 내세워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보도의 타이밍에 따른 정보의 상업적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언론의 감시기능이라는 명분을 외부적으로 내세운다. 이와 같은 언론의 범죄 보도로 인한 사인의 인권침해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전 단계로서 특히 국가기관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보도 자료

1)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 입법되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포함되어 발의, 가결되었으며 정부의 형법 초안에는 없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대리 엄상섭 위원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의자의 명예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법으로써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 신설을 두고 재적 원수 92명 중 可 66표, 否 0표로 가결, 본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343-347). 이는 입법자들이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피의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여지를 없애기 위한 취지도 입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심석태, 2006: 6).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취재하는 언론의 기자단과 기자실은 당시에 경찰과 검찰 등 주요 공공기관에 구성·운영되었으며 정부와 권력의 조직적인 정보통제에 맞서는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정부·권력과 결탁해서 이익을 얻고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난받는 양면성을 보였다(김남석, 2001: 186-187).

2) 1992년 10월 법무부의 형법개정법률안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단서규정으로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시도가 있었지만, 논란 끝에 반영되지 않았고, 2009년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피의사실공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이루어졌다면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2015년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임기 완료 폐기되었다. 2019년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죄의 장에 피의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을 신설하여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안 발의가 되었다가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의 배포 또는 브리핑 등 수사공보를 통하여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점 역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최근 1988년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경우는 재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재판부에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부실수사로 인한 잘못을 인정했다(동아일보, 2020.12.17.). 그런데 윤성여씨가 검거된 당시 수사단계의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성여(22.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21 544-1)씨를 검거, 강간 살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 ” (한겨레신문, 1989.7.28.), “... 살해한 용의자로 윤성여씨(22. 화성군 태안읍 형제 농기구 센터 수리공)을 연행,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 .”(동아일보, 1989.7.28.)으로서 실명이 그대로 공개되고 자백한 사실과 주거지등이 그대로 나타나며 ‘경찰에 따르면’이란 표현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부실수사와 잘못된 판결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의사실공표로, 당사자의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문제, 사법당국의 예단 가능성 등 현재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의 논의 시 거론되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함축된 것이다. 비록 30여 년 전의 판결 및 수사, 언론 보도로 인한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건이다.

이것 외에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문제 된 것은 1999년 대통령 법무비서관 ‘웃 로비’ 사건과 2003년 전 현대그룹 회장 비자금 사건, ‘불량 만두소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도 있었다. 그리고 2004년 12월 밀양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즉 수사공보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떻게 발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심각한 자성의 계기가 되었다(이승준, 2009: 8). 2009년 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서거 이후로는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어 주로 검찰의 개혁과도 관련이 있다는 인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김재현·임정호, 2019: 2). 최근에는 고유정 살인사건이 있었고, 울산에서는 김·경간의 갈등의 일환으로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검찰의 수사가 강력하게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기소유예로 흐지부지하게 되었다(법률신문, 2019.7.23.; 중앙일보, 2020.7.23.).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보장이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가 언제나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보다 항상 앞서는 것도 결코 아니다.

현행 형법은 그 타협·절충적 측면에서 기소 이전의 공표행위를 금지하였다고 보는 견해³⁾도

3) 그런데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일정한 요건 아래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공보 행정규칙은 부처의 훈령으로 형법규정의 입법 취지를 일탈하여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있다. 또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만 있을 뿐, 검사가 기소한 사례가 전무하고 형사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피의자의 무죄추정이나 기타 법익을 충실히 보장해 왔기 때문인가 아니면 증거부족이나 위법성조각사유 때문인가라고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2008-2018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나 기소된 건수는 전무하다(매일경제, 2019.6.6.).⁴⁾ 이런 이유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조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범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수사 의지의 부족, 보도의 신속성을 위해서 알 권리를 내세우는 언론의 집요한 요구, 피의사실공표죄의 법리적 해석의 어려움, 과거 공보행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일 것이다(배문기 외 2019: 발간사; 이상호·정효원, 2007: 27).

경찰의 초동수사에서는 다른 수사기관보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의 위험성이 높고 문제의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원은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표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과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내용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기타 사회상규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대동소이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에 부합할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상규 위배 여부의 기준으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공보에 관한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일정 사건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단지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공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너무 폭넓고 포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4) 수사기관은 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또는 피의자의 권리가 일정수준 제한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수사기관은 현재의 공보에 관한 행정규칙에 따라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 적법성을 어떻게 타당하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한 수사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부합되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만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최근 더 커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명예 등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충돌되는 점점에 있으므로 최대한 공존가능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행위를 형법 제126조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와 요건에 의해서 발표되는가를 알아본 뒤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후 피의사실공표행위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언론보도의 조화로운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피의사실공표의 법적 정당성 및 한계

1. 피의사실공표와 기본권 제한

1) 피의사실공표와 기본권의 충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사실공표와 관계있는 당사자 간의 기본권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충돌이란 상이한 기본권 주체들이 상충하는 여러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하여 나름의 기본권 규정들을 원용하는 경우에 원용된 기본권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이다(최우정, 2016: 72). 기본권의 충돌은 헌법상 보장된 규정들로부터 여러 기본권 주체의 주관적인 권리가 도출되고 이것이 상호 구체적인 경우에 교차하면서 발생한다. 즉 기본권은 단지 국가와 기본권 주체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권 주체 간의 대립과 갈등도 초래한다. 특히 기본권의 성격이 단지 주관적 공권의 성격만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기에 기본권 주체 간의 기본권충돌에서 적절한 조화가 필수적이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대상자의 인격권, 피의사실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권, 알 권리 등이 충돌된다.

(1) 피의자의 인격권

인격권이란 기본권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인 생명, 초상, 성명, 명예, 건강, 신체, 정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내용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정종섭, 2015: 425; 한수웅, 2015: 547), 우리 헌법에서는 인격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있지만 학설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에서 인격을 도출하는데 인격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격 발현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포괄하여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한수웅, 2015: 54).

헌법재판소 역시 일반적 인격권(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과 명예권(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을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별적 기본권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기본권은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인격권과 명예권은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기본권이며 헌법 제10조에서 이들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피의자의 초상이나 성명이 개인정보라면, 일반적 인격권의 핵심내용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한 직접적 관련을 맺고 헌법 제17조에 그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한수웅, 2015: 548).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포는 실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의사실공포로 밝혀지는 피의자의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등의 권리침해가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고 이들 충돌되는 기본권 간의 실질적 조화를 이루는 점점에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2헌마425 결정).

2) 알 권리

(1) 국민의 알 권리

알 권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와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청구권으로 파악하기도 하면서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의 측면에서 시작하여 사인 간에 확대 적용되면서 그 개념의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한다(박용상, 2002: 56).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개념에 대해서 각각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 헌법에는 알 권리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1970년을 전후하여 알 권리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1990년을 전후하여 판례는 알 권리를 헌법상의 구체

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언론사가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1950년대 부터 부각이 되었다. 이렇듯 미국에서의 알 권리의 개념은 국가에 대해 언론사가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이재진, 2004: 234).

미국 연방대법원의 스튜어트 판사는 언론사의 취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므로 그에 대한 억압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이재진, 2004: 235). 결국 미국에서 알 권리는 언론사가 국가 소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언론사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개념과 접목하여 언론사를 국민의 알 권리의 대변인 또는 위임인이라는 지위까지 인정하게 되었다(최우정, 2020: 143).

한편, 정부가 소유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이 그 역할을 위임 또는 대리해 정부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공인수탁자론이다. 미국에서 언론의 특수한 지위를 주장하면서 공인수탁자론이 등장했으며(고민수, 2007: 423),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은 알 권리의 개념을 완전하고 정확한 뉴스에 접근할 권리까지 확대하고자 자신을 국민이 향유하는 알 권리의 ‘공인수탁자’라고 주장했다(장용근, 2005: 12).

그러나 공인수탁자론은 개인이 가지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일신전속성이 약한 기본권이라는 점과 공인수탁이 성립되기 위한 신탁의 형식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고민수, 2007: 429). 비판론의 근거를 더 들여보면, 공인수탁자론이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언론시장 질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신문사와 방송사에 기초하며 당연히 이들은 구독료와 시청료를 확보하기 위해 단독, 특종보도를 지향하게 되고 그러한 점에서 공인수탁자론은 정부와 사기업의 비밀스러운 내용에 대한 일종의 언론사의 특권과 같은 취재를 요구하면서 등장했다는 점이다. 법학적인 관점에서든 일반론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실정법적인 근거도 미국의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기 힘들다(최우정, 2020: 160). 우리나라도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취재선진화방안의 헌법소원에서 비록 본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소수의견은 정부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청사 일부를 제공하는 것은 편의 제공에 불과한 것이고 독자들의 알 권리와는 상관없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775 결정). 공인수탁자론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최우정, 2020: 159).

2. 이익형량 기준 관련 쟁점

1) 이익형량 일반이론적 관점

이익형량 일반이론은 충돌되는 법익 상호 간에 우열을 인정하여 특정한 이익을 우선시키는 방법이다. 피의사실공표죄로 보호하는 피의자의 인격권과 충돌하는 다른 헌법적 가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보도의 자유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상충되는 두 헌법적 가치의 해결방안으로서 기본권 간의 이익형량이 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익충돌의 경우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BVerfGE 30, 201), 여기서 소위 이익형량의 방법과 비례의 원칙이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내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성정엽, 1999: 100). 그러나 충돌하는 기본권은 각 기본권 주체에게는 중요한 헌법적인 법익이므로 어느 기본권 주체의 법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으로서의 이익형량은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기본권의 대립을 조정하여 하나를 완전히 배제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충돌하는 두 개의 헌법적 가치는 가능하면 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적 특징과 개별적 경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이익이 후퇴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BVerfGE 35, 202(225): Lebach 판결).

대법원도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면서 기본권의 충돌 경우는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됨을 강조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사실상 간단치 않은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박선영, 2000: 168; 이준일, 2006: 181). 이처럼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설명에만 그치고 있고 개별적인 구체성의 판단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져 온 사안들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돌하는 기본권의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일방의 기본권을 제한한다(정재황, 2018: 262). 그러나 이익형량에 의한 기본권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 견해는 이익형량이론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구체적 기준 없이 판단한다는 점, 기본권의 효력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기본권의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는 일은 바로 헌법적 가치질서에 대한 형성기능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 등의 사유로 비판받고 있다(홍성방, 1999: 11).

2) 공적 인물 이론적 관점

공적 인물이론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대상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취재대상이 국민의 중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 보장 범위의 폭을 넓히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정치질서에서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공적 혹은 정치적 사안에서 공적 토론의 의제를 제공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취재대상의 인격권을 제한 내지 침해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취재대상에 대한 보도로 야기되는 취재대상의 인격권의 보호범위를 줄여 그 위법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소위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사건⁶⁾에서 공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보도가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조정의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신문 보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공인과 일반사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여 이를 구별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그렇다면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인 즉 공적 인물의 경우에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사인의 경우보다 보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공적 인물의 개념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인가가 문제 된다.

공적 인물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 사건에서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무원 스스로가 그 언론 발행인 등이 그 내용의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무시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현실적 악의, Actus Malice)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설리번 사건은 뉴욕 타임스에 마틴 루터킹(Martin Luther King)의 지지자들이 낸 광고에서 시작된다. 광고의 내용은 인종차별적 미국 남부 공무원들이 킹 목사를 날조된 혐의에 의해 7회 체포하고 시위자들을 학대하였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특정인의 이름은 언급된 바 없으며 광고상에는 “남부의 헌법 위반자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의 경찰서장 설리번이 자신이 그 위반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뉴욕 타임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이다(이용식, 2010: 106).

6) 강원도 의회 의원이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는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통일원과 경찰, 검찰이 조사한 사실을 강원일보가 보도한 것임(강원일보 1995. 4. 9.).

본 판결 이후 현실적 악의론이 적용되는 대상이 공무원에서 공적 인물로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혹은 공직자는 정부 조직상의 공무원 중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 또는 통제권이 있거나 공중에 그러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다 (Rosenblatt v. Baer, 383 U.S. 75, 85).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적 인물은 3가지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첫째는 전면적 공적 인물(unlimited public figure)로서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공적인 인물로 취급되는 사람이고 (한위수, 2002: 141), 둘째는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 public figure)로서 특정한 공적 논쟁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논쟁의 전면에 나선 자이며(한위수, 2002: 141), 셋째는 비자발적 공적 인물로 특정 타인에 의하여 공중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 보도대상이 된 비자발적 공적 인물이다(이용식, 2010: 109).

여기서 형사피의자가 공적 인물에 포섭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앞의 분류에 의하면 형사피의자는 비자발적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점에서 언론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의자의 인격권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이용식, 2010: 112).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포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범인이나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익명 보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그러나 보도기관은 그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익명으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이처럼 공적 인물이론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다른 일반사건들과 달리 피의사실공표의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 범죄의 심각성별 관점

범죄의 심각성 별 관점은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충돌의 경우 그 공표된 피의사실의 범죄유형과 범죄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우열을 판단하는 것이다. 중범죄이고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가 강한 범죄일수록 그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공표 그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범죄유형에 따른 이익형량 평가의 길은 먼저 실정법에서 구해져야 할 것이다. 실정법 기준으로서 법정형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형은 개개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의 내용에도 의존하며 보호범의 범위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의 비교가 불가능한 때가 있기도 하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예를 들어 생명과 신체는 재산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범의의 서열에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사실이다. 다른 법령 또는 헌법으로부터도 실정법적 기준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이용식, 2007: 22).

실정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사회통념’이라고 것이 기준이 된다. 사회통념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경험으로 지도하고 구속하고 통제하지만, 규범보다 그 성질은 약하다. 그러나 체계적인 규범은 아니지만,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개인을 사회생활에 연결시키는 것이고, 사회통념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견지하는 역할을 한다(이용식, 2007: 24). 따라서 사회통념은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사회통념은 명확한 것도 분명 아니고, 분명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늘 확실성이 약속되는 것도 아니다(천진호, 2001: 160; 최병각, 2002: 129-134).

III. FGI 조사의 의의 및 방법

1. FGI 조사의 의의

초점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이하 FGI)은 마케팅영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던 연구방법이며 공동관심사와 경험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집단으로 구성해 토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나 전문가 집단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해, 새로운 이론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최현선·정윤수·남기범·김은수, 2011: 131).

이러한 FGI 조사는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청취가 용이하여 새로운 사실과 방안의 발견이나 대화 형태의 진술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실태나 언어, 표현방식을 수집

하고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적 조사인 ‘서베이’⁷⁾와 구별되고, 면접자와 응답자 간에 일대일 형식이 아닌 여러 명의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집단으로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개별심층면접’과 구별된다(박정욱, 2019: 78). 특히 정책연구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 환경에 관한 자료를 모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에서의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즉, 수사발표의 운영실체를 밝히고 그 개선점을 탐색함에 있다. 연구기법선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발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염두에 두고 수사발표의 집행과정이나 결과를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둘째, 수사발표의 실질적인 작동 기저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현장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장의 정확한 실태분석을 위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단의 생생한 인터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 집단 혹은 사례 등의 심층적인 의견과 인식 수집에 있어 수량화가 불가능한 가치, 태도, 인식 등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FGI조사를 활용하게 되었다. 특정 연구주제 및 사례와 관련하여 경험자·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식과 경험을 상호 교류하면 좋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조사방법 및 참여자 구성

인원의 경우는 외국의 문헌에서는 6-10명을 권장하지만 이에 엄격히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두 그룹이 3명이고 한 그룹이 5명인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토론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그룹의 크기가 커지면 토론에서 소외나 배제를 겪는 참여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FGI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는 사전조사를 통해 목적에 적합하게 조사목적에 맞는 질문의 주요주제, 요지, 순서 등을 간략하게 준비하고 제시한다. 구조화된 질문지처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질문할 것인지 개요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석자의 상황과 반응에 따라 수시로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유지해야 한다.

인터뷰형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이므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집단을 통한 발상의 연쇄작용인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⁸⁾와 같은 현상도 기대할 수도 있다(박정욱,

7) 기술적 연구의 일종이며, 모집단을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설문지와 같은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질문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장점은 범위가 넓고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비교적 정확성이 높다. 단점은 획득된 정보가 피상적이며 실질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고도의 조사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7578&cid=62841&categoryId=62841>, 재인용,2021.6.15.최종검색).

8) 미국의 사업가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이 사용한 용어로 작은 규모로 시작한 것이 가속도가 붙어 큰 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말하는데, 복리효과를 설명하면서 눈덩이 효과를 언급했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2021. 6. 15. 최

2019: 79. 재인용). 그러므로 개개인의 경험 차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제안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그룹의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였음은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다. 참고로 연구 참여자 정보와는 다른 알파벳 배열로 기술하였다. 이는 연구출판물이 참여자들 개인과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연구자의 의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인터뷰 내용이 민감한 사안일 경우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다. 연구 참여자 구성은 주로 지인들의 소개를 통한 구성이었다. <표 1>과 같이 경찰관 3명, 경찰 출입 기자 3명, 대학의 경찰 행정학 관련 교수 5명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1회 2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표 1> 피의사실공표 관련 전문가 대상 FGI 조사

그룹	구분	연구 참여자	경력 및 특기사항	일시
경찰그룹	A	경찰관(계급: 경정)	경력 28년, 공보부서 5년 근무	2021.1.28.(목) 오후 2시30분 - 4시30분
	B	경찰관(계급: 경정)	경력 33년, 수사부서 10년 근무	
	C	경찰관(계급: 총경)	경력 28년, 공보부서 5년 근무	
기자그룹	D	기자	경력 15년	2021.1.26.(화) 오후 2시-4시
	E	기자	경력 20년	
	F	기자	경력 10년	
교수그룹	G	교수	교수10년, 경찰경력 23년	2020.12.17(목) 오후 4시-6시
	H	교수	교수 3년, 경찰경력 23년	
	I	교수	교수 8년, 경찰경력 19년	
	J	교수	교수 10년, 경찰경력 17년	
	K	교수	교수 3년, 경찰경력 32년	

첫 번째, 경찰그룹은 현직 시·도경찰청 홍보과장(계급: 총경) 1명, 일선서 여성청소년과장 1명(계급: 경정), 일선서 경비교통과장 1명(계급: 경정)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도경찰청 홍보과장과 경비교통과장은 대언론 상대로 경찰공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근 근무한 경력이 3년 내지 5년 정도 되었으며, 여성청소년과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다년간 있는 자이다. 일선에서 언론을 상대로 주로 경찰수사발표를 담당하는 부서는 홍보업무와 수사업무이고 이런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은 수사발표와 피의사실공표죄의 관계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룹은 교수 그룹인데, 주로 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과와 법학과에 현재 재직 중인 분들로 선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교수가 되기

중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5308&cid=43667&categoryId=43667>, 재인용).

이전에 경찰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오랜 기간 있는 분들이었고, 경찰관으로서 근무 시에도 수사 기능에서 다년간 근무한 전문성을 갖춘 경력이 있었다. 따라서 경찰관으로서 근무 시 언론 기자들과는 업무 관계로 접촉한 경험들이 있어서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문적인 이론이 조화되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세 번째 그룹은 기자 그룹인데, 대구경찰청 출입을 하는 모(某) 기자 한 분을 통하여 소개받아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지방검찰청을 오랜 기간 출입한 사회부의 베테랑들로서 지역 신문기자 한 명과 중앙 일간지 기자 두 명으로 구성하였다. 경찰의 수사발표를 서면이든지 브리핑으로든지 많이 접해 본 경험이 있는 바, 경찰 수사발표에 있어서 피의사실공표죄와의 관계상 가장 실질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3. 주요 면접내용

논의 범주는 경찰수사공보에 있어서 피의사실공표죄의 관련성에 대한 각 그룹 구성원 간의 차이와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틀로서의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에서 각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의 오·남용사례,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 등 경찰의 수사 관련해서 현장에서 직·간접으로 경험한 수사공보와 피의사실공표죄와의 관련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논의에 앞서 연구자는 참여 대상자들과 전화통화로 연구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며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그룹인터뷰 날짜와 장소를 공지하였으며, 인터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내용의 녹취과정, 자료의 이용, 비밀유지, 폐기에 관해 설명했다. 미리 준비한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지만 주로 그룹 내 역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토론 초반이나 그룹 내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때에는 진행자가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개입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서는 한 명의 진행자인 연구자가 총 세 번의 그룹인터뷰를 일관되게 진행하였다. 모든 그룹은 그 자체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진행자가 조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집단의 역동성이 항상 연구 목적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룹에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되는 집단 역동의 토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진행자가 할 역할이다.

그룹인터뷰는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녹음하고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일반적인 주제 분석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먼저 각 그룹인터뷰의 녹취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전사자료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고자 하였다. 전사자료들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표시하면서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찾고 개념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개념

들을 재검토하고 전사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핵심주제의 개념들을 찾아 나갔다. 이렇게 의미 있는 단위로 자료를 나누는 분할작업을 시작으로 그 안에서 다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뽑아 본문 그대로의 코딩을 실시한 후 범주화하였다. 분할과 코딩을 통해 인터뷰 자료와 객관적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연관 지어 분석함으로써 경찰수사공보를 둘러싼 경찰과 언론의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역동적인 모습도 파악할 수 있었다.

IV. FGI 조사의 주요내용분석

1. 수사사건 등의 공보 시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가 되는 문제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의 행위 주체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문제로서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 제 9조에 “정확하고 일관된 수사사건 등의 공보를 위해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로서 공보를 전담한다. 다만, 「수사부서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과 그 밖에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에 전담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본부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한 수사진행과 원활한 수사공보를 위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부서의 장 이외의 자로서, 수사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를 별도의 공보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수사부서의 장 또는 수사를 담당하는 자는 수사를 하면서 대언론 관계도 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과 언론의 경쟁에 따른 과열취재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와 수사를 직접 수행함에 따른 공명심 유발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또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인 수사부서의 장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자를 공보책임자로서 지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다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 B 경찰관은 수사를 제일 많이 하고 해당 관계되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반대인데, 옛날에 형사계장이 모든 기자 상대를 다 했고, 지금은 과장이 홍보 책임자로 되어있는데, 막상 수사를 제일 많이 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 있다. 지금 수사부서의 장이 하는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물론 정식 브리핑을 해서 공보를 한다고 하면, 준비를 해서 나갈 것, 안 나갈 것 정리를 하겠지만,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공보까지 맡는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론 예외조항에 해당

되어 공개하는 경우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보관을 두어서 그에 따른 발표를 하고 필요한 것은 수사부서의 장과 교류를 해서 발표를 하고...(연구 참여자 B).

위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현행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가 된다면 누구보다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언론과의 소통 등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경찰수사사건의 공보라는 측면에서 언론과의 소통 측면 못지않게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관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그 점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수사에 있어서 공보책임자가 된다는 의미는 언론(기자)을 전면적으로 상대한다는 의미이다. 서면으로만 수사발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된 전화취재 등도 상대해야 하고 구두로 브리핑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제된 표현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구사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현행 제도상의 공보기능과도 계속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도 무리가 있다.

D 기자의 경우는 각 경찰서의 수사공보책임자가 수사부서의 장인 경우에 공보준칙에 대한 교육문제, 또한 언론기관종사자와의 친분 문제나 개인성향에 따라서 수사공보가 제각각으로 달라진다고 한다.

만약에 수경경찰서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홍보계에서 기자한테 문자로 수경서 형사과장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주면서 책임자라고 하는데 어떤 과장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어제 당직해서 A 계장에게 물어보라' 이런 경우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이 너무 많이 알아버리니까 사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니까 a에서 c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친분이 있다거나 개인성향에 의해서 d, e, f까지 이야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선배님 말씀대로 공보준칙에 대한 체계적인 숙지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성향에 따라서 피의자 특정되거나, 피의자의 2차 가해가 우려가 될 상황까지도... 예를 들면 혈중알코올농도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수사부서의 장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고, 대구경찰청에서 일선 서까지 체계적으로 교양을 시켜가지고. 매뉴얼 하면 일괄적으로 대응이 되는데, 10개 경찰서에서 일사분란하게 공보준칙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일 수 있고요. 기자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연구 참여자 D).

위의 사례에서는 기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각 경찰서에서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가 되었을 경우에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 한 것인데 수사부서의 장들이 공보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인별로 공보준칙의 체계적인 숙지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편차가 심하게 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자들과의 관계가 친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성향에 따라서 오픈되는 정도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다. 검찰과의 공보실태의 비교를 통해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검찰은 공보관이 있어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측면에서 공보규칙을 이를 준수하기가 쉽다고 한다. 기자들도 수사부서를 직접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서 엄청 답답하지만 결국 포기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F 기자의 경우도 수사공보책임자가 해당 주무부서의 장이 아닌 공보관이 하게 되면 기자들의 입장에서 답답한 측면이 됨을 강조했다.

공보관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든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약이 크고 저는 그것을 반대하거든요. 취재에는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취재 경쟁이 더 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a, b, c, d, e, f까지 알 수 있어요. 전문공보관을 도입하면 다 막히거든요. 답답한 측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연구 참여자 F)

위의 사례는 공보관제도를 두고 있는 검찰청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수사부서를 직접 취재하는 경우보다는 공보관제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취재의 벽이 높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보관제도가 언론을 늘 상대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죄와 수사기밀의 조율에 있어서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역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D 기자의 경우는 경찰서마다 수사공보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기자의 능력에 따라서 취재의 폭이 달라짐을 호소했다.

아까도 말했는 것처럼, 일관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없고, 훈련이 안 되어 있고, 공개의 기준을 갖고, 심의하는 기구도 없으니까. 일선 지방청마다 균등하게 일사불란하게 발표의 순도나 내용이 동일하냐 하면 다르거든요. 대구도 일선서마다 기준이 달라 기자마다 3개를 알아내는가 하면, 10개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연구 참여자 D).

위의 내용으로 보서는 피의자의 인권과 알 권리의 조화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보담당관이 공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공보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면 시도경찰청과 조율을 통해서 언론을 상대로 하는 수사발표의 기준이 결정되겠지만 기자가 겪는 일선 현장은 일선 서마다 기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경찰서의 수사부서의 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공개의 폭이 다르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가 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등 교

육이 제대로 되었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면 경찰수사사건 등에 관한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음에도 일관된 기준이나 매뉴얼,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표현한 점에서 경찰수사공보행정 규칙의 미비점이 드러난다 하겠다.

이에 반해서 H 교수는 경찰 일선에서는 공보담당관이 수사공보의 책임자가 되면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검사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국 검찰청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인가 경찰인가 차석이 발표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경찰청장이 발표할 사건이지만, 일본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차석 같은 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공보에 대해서는 수사부서의 장이나 관서장이냐 관서의 다른 부서장이냐 이것을 떠나가지고 사건이 커버리면 경찰청장이 발표하잖아요. 일본은 그것을 관할하는 것을 자치사무라해서 그 지방청에서 발표한다. 나름대로의 원칙이 정해진 것 같은데 우리는 상황에,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규칙을 만들면서도 고민을 한것이 수사부서의 잘 말하고, 별도로 해서 홍보담당자에게 시키자고 했는데, 대응을 못 해서 기자가 참지 못해서 형사과장에 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형사과장은 다시 홍보담당자에게 진화하고 물어보고 해서 업무가 중복이 돼 버리는게 되었다. 특히, 검찰이야 다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바가 가능한데, 우리 경찰도 국수본이 나온다면, 국수본의 전담부서를 만든다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H).

위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현재의 수사공보규칙을 제정할 때도 공보책임자에게 공보의 책임 부분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의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공보관보다 오히려 수사부서의 장에게 연락을 해버려 업무가 중복되고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에서는 맞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의 체제로 경찰수사의 체제가 바뀌면 수사공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표현한다.

교수 I는 수사부서의 장이 하던지, 아니면 수사라인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되고, 어느 경우이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한다.

경찰이 공보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부서의 장이 아닌 다른 계장, 과장, 팀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이미 또 언론의 어떤 구설수랄까 잘못된 보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답변에 대한 한계가 있기때문에 수사부서의 장이 하게 된 이유도 수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가장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건데 폐단도 단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것이 옳다고 답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I).

위의 견해를 살펴보면,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가 되는 이유가 수사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기자들을 상대로 가장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 여겨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폐단과 단점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경찰관 D는 수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수사부서의 장이 맡아야 브리핑이 언론에 보도될 때에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수사부서의 장이 많이 알고 있으므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깊이 알고 있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질문도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눈만 껌뻍이고 있으면 모양이... 내용도 모르면서 브리핑했다, 시민들이 브리핑을 보고 봤을 때... 내용을... 경찰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연구 참여자 D).

경찰관 A는 수사발표도 수사의 연장선상의 개념이고 홍보실과의 협의를 통한다면 수사부서의 장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

사실 브리핑도 하나의 수사의 과정이거든요. 원하는 브리핑으로 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하는 것이 맞고... 정말 예외적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실에서는 수사과장을 정해주어요. 언론의창구를 통일해 주어요. 정말 못 받으면 팀장 등 1명을 더 넣어 주어요. 내가 메시지를 날리면 통일된 내용을... 협의를 할 일이 생기면 홍보실과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알려주는데 너무 큰 부담이 있으니까. 팀장 정도는 언론 담당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홍보실에서 맡는 것은 안 맞다(연구 참여자 A).

위 경찰관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홍보실과의 협의만 잘 되면 언론의 대응창구를 통일하고 언론과의 수사발표 등 대응도 수사의 한 과정이라 여겨지므로 수사부서의 장이나 팀장이 공보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

교수 J는 기자들과의 대응능력이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므로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를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 확인된 사실만 브리핑하고 수사경찰의 합리적 의심과 추정은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

수사사건 언론브리핑은 규정상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이나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부서의 장 이외에 다른 경찰공무원이 공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사건은 사실관계, 전후 맥락,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의구심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할 경찰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수사부서의 장 이외에 다른 경찰공무원이 공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경찰공무원은 수사실무자만큼 그 사건에 대해 잘 모르므로, 기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사부서의 장 외에 실무담당계장을 추가하고 그 외 경찰공무원은 공보책임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경찰이 언론브리핑을 하더라도 브리핑 내용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가지는 의문점과 경찰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잔혹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곁들여 곁가지에 해당하는 사안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 참여자 J).

위의 교수 J의 견해를 분석해보면,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 상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이나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부서의 장 이외에 수사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를 별도의 공보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부서의 실무 담당 계장을 공보책임자로 맡아야지, 그 외의 경찰공무원은 공보책임자로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공보를 맡게 되면 기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살 개연성이 더 많다고 한다. 이는 기자들의 알 권리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라 할 수 있는데 기자들이 가지는 의문점이 보도되거나 경찰을 비난하는 기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수사현장에서 기자들은 좀 더 많은 사항을 취재하기 위해 수사에 임하는 경찰을 흔드는 기사를 양산한다. 그러한 경찰 비난 기사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것들을 흘리거나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수사부서에서 언론을 상대하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2. 경찰수사공보규칙에 있어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

경찰수사발표에 있어서 경찰청규칙 제5조의 경찰수사의 예외적 공개사유에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1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소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조사에서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 상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으로 예외적 공개사유의 구체성을 들고 있다.

경찰수사에 관한 공보규칙에 있어서 피의사실의 예외적 공개사유에 대한 인정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A 경찰관과 B 경찰관도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예외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현장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한다. 교수 G는 공공성, 공익성, 공공의 안전, 급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 등 이런 판단을 어떻게 정확히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기사실도 브리핑 룸으로 대체해야 된다고도 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공성, 공익성, 공공의 안전, 급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 이런 판단을 얼마나 정확히 내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공공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어 너무 식상한 경우가 있지만, 변호사, 법학자, 범죄학자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윤리의식도 있고, 보안각서도 쓰게 하고 해서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지만, 공표에 관한 어떤 장치를 위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연구 참여자 G).

위의 견해를 분석해보면, 예외적 공개사유 중 하나인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나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에게 즉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해석문제로 공공의 안전이나 급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 등은 행정법적으로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실무를 다루는 현장에서 개념규정이 명료하지 않아 혼란을 겪을 소지는 다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외적 공개의 일관성이 없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수 J도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 공개 여부, 공개 범위 등에 대해서 경찰은 헌법적·행정법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형사공개심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예외적으로 사건을 공개해야 한다면, 공개 여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사항이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법리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형사법 관련 지식은 충분하나 헌법적·행정법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를 조직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신설할 때 위원의 임기, 연임 가능 여부, 자격 등을 규율하되, 위원중 일부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J).

위의 의견에서도 예외적 공개사유의 판단은 피의자의 인격권, 사생활, 알권리라든가 공공의 안전등 헌법이나 행정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의 부족은 심의기구를 돕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기자 E도 역시 예외적 공개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나 심의기구의 부재를 지적했다.

제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심의회 같은 것은 1차 종결권도 있으니가 경찰이 그전에 미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피의사실공표 해서 무죄일 수도 있는 피의자는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시민의 공익성. 이런 점에서는... 맹점이 있겠다... 심의회를 구성해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들도 미주알고주알 다 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걸 대중에게 알려서 추가 피해를 막자... 기자로서 그런 기사를 쓰면 보람도 되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정 안되면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라도(연구 참여자 E).

3. 언론과 사건담당자와의 접촉 부분

현행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에는 언론기관종사자의 수사부서 사무실 출입여부와 형사사건과 관련된 개별적인 접촉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평소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는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상당한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잘못된 수사발표의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밀행성, 수사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나 경찰서 출두 사실을 타인에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는 환경조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김재민, 2004: 21-22).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2차 피해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2차 피해란 사건 발생 이후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입은 피해를 말한다(장응혁, 2016: 45).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G교수는 예전의 기자실을 언급하면서 경찰관서에 특별히 이슈가 없는 경우에도 장시간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지금 경찰서는 기자실을 없앴죠? 기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자기들의 공간을 경찰관서에서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브리핑룸에서 중대한 보도가 있다면 기자를 불러서 노트북 놔두고 기사 송고를 할 수도 있지만, 아예 기자들이 와서 차 한 잔씩 하고,

담소하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브리핑룸을 두고 특별한 발표가 있으면 본사에 기사 송고를 해주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자들이 앉아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면서 공간을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검찰청은 검찰청 출입 기자단을 조직해서 멤버십을 얻지 못하면 기사들을 주지 않는다는데...(연구 참여자 G).

위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현재 경찰서는 기자실이 없지만,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은 기자실을 두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 수사 관서에 기자실이나 기자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는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유래되었는바 마치 언론기관들의 사무실이나 진지처럼 사용되고 있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경비에 의해서 기자실이 유지된다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또한 수사부서의 직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의 경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H 교수는 출입문제는 최근 들어 기자들의 무단출입이 문제 되어 어느 정도 절차를 두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청에 맡겨서 옛날에는 서류를 막 뒤지던가 요새 허락을 받고, 사례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을 의율해서 검찰청에 들어가서 수사서류를 빼돌리다가 입건되었다가 처벌되지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박원순 시장 때문가요? 자료를 빼돌리다가 서울시에서 고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기자들의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출입, 제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차를 두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연구 참여자 H).

위의 의견으로는 기자들의 출입문제가 어느 정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경찰관서의 출입문제로 문제시 된 경우는 없는 것은 출입을 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입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파악된다. 또한 개별적인 접촉문제는 언론 예상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여 처리하고, 접촉을 금하는 것은 언론기관종사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경찰이 제도적으로 언론 예상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준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른 형태로는 생질에서 풍속업소 단속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뭐가 제한을 걸어놨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문제가 생기면 보고했냐 아니면 죽이고 결국 뭐가 문제가 터지

면... 제도가 운영이 되어가지고 제가 만약 기자라면 풍속업소라면 사회적 위험이 있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범죄자로 보는 거야 하면서 문제를 삼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 H).

위의 사례에서 H 교수는 언론기관 종사자인 기자와의 수사 경찰과의 개별적인 접촉문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마치 풍속업소 운영자와 경찰과의 접촉처럼 느껴져서, 특히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일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약 접촉하게 되고 그것이 언론보도가 예상되면, 예상보고를 하면 된다는 견해를 보인다.

기자들과 언론기관종사자와의 접촉 부분은 공보규칙에 규정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 경찰에게도 관계되므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두어야 한다고 I교수는 언급한다.

공보규칙에 규정할 수도 있지만, 전체 경찰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찰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규정에 둘 수도 있겠죠. 공보분야에 있는 분만 신경 쓸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될지는 복무 관련 규정들에 언론과 관련된 금지 규정이라 할지 보고 규정이라 할지... (연구 참여자 I).

G 교수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피의사실을 터뜨리는 것은 창구의 일원화 측면에서도 어떤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외적인 공개사유에 대해서는 심의기구를 두어서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근무할 때도 조사계장실에 기자들이 가끔씩 들렀었지. 개별접촉을 해가지고... 피의사실이나 사건의 전체 흐름을 보도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사관이나 개별경찰관을 접촉해서 피의사실을 터뜨리는 것, 이건 범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아까 창구의 일원화 이야기했지만, 특히 피의사실은 공개적인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일원화시키고, 개별적이고, 피의사실을 취재하여 가지고 개별적인 접촉 후 피의사실 터뜨리는 것은 통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G).

위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수사경찰관 등이 언론종사자 등과 개별접촉을 통해서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범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의사실은 공개적인 브리핑 등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또한 수사공보행정규칙을 떠나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서 공보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정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J 교수는 언론기관종사자와 평소 경찰과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론 접촉이나 기자들의 기자실 상주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지만, 상사나 동료가 언론 기자와 친하면 자신의 사건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언론 기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연구 참여자 A).

개별적인 기자들의 접촉문제와 수사부서의 사무실 출입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관 B는 검찰과의 비교 측면과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외압문제를 봐서라도, 이제는 금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수사부서는 수사 기능이 있는 사람들하고, 왜냐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수사개입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사실은 보도의 목적이 있지만, 사건 개입의 의도도 있잖아. 의도적인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연구 참여자 B).

위의 사례에서처럼, 경찰관 B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기자들과의 개별접촉은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건 보도의 문제를 떠나서 사건 개입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도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이다.

기자 D는 경찰의 언론기관종사자의 개별접촉이나 사무실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이제 힘이 세진만큼 고민을 해봐야 한다. 하지만 비대해진 경찰수사권의 감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금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낸다. 기자 E, F도 경찰 조직의 감시 활동 측면에서 막연한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다.

검찰은 변호인하고 접촉한 것도 기록해두고, 언론은 아예 접촉이 안 되고, 그만큼 검찰의 권한이 막강했고,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등등... 공개되지 않을 사건이 흘러나갈 수도 있고 해서. 반대로, 경찰의 1차 수사권종결권까지 갖게 되었고, 국수본 체제로 가게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6가지로 축소된 상황에서 경찰은 비대해진 상황이잖아요. 저는 취재가 쉽다 안 쉽다 개념을 떠나서 힘의 균형이 역전된 상황에서 보면 경찰도 분명히 개별적인 접촉이라든지, 자유로운 출입이라든지, 경찰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은 예를 들면, 특정 경제사건을 했는데, 이제는 경찰이 그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분명히 역할

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도 그런 목적도 분명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차단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찰도 검찰 비대했던 것처럼 자유로운 언론 접촉을 막아야 하는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 경찰이 힘을 많이 가졌지마는, 정인이 사건, 뭐... 범죄, 비위, 이용구의 부적절한 영상물이 막 터지면서 과연 막강한 수사의 힘을 가진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는냐는 비판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도덕적인 것도 그렇고... 언론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못하고 차단되어 있다고 보면 과거 검찰의 비위처럼 해 먹고 불기소해버리고(연구 참여자 D).

서에서는 형사계 사무실에 들어가죠. 지방청 같은 경우도 출입 기자들은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따로 규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정해버리면 허허... 저희 뭐 먹고 삽니까?(연구 참여자 E, F).

위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예전보다 그 권한이 국가수사본부의 체제를 갖추고,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게 되는데, 그 권력이 비대해지는 만큼, 언론의 감시 기능 등 모니터링 기회도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연한 접촉금지도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국민의 관점에서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V. 개선방안

1. 공보의 주체측면

현재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9조에서 수사공보에 관한 사항은 수사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이나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부서의 장 이외에 수사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를 별도의 공보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수사사건 등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건담당자로 하여금 공보책임자가 언론의 취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공보책임자는 수사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제일 문제시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언론 상대로 공표하는 경우이다.

FGI 조사의 여러 사례에서는 해당 수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리고 잘알고 해서 언론을 상대로 대응을 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경찰수사에 있어서 공보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언론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되는 자를 책임자로 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 수사업무에 전념해

야 하는데 공보업무까지 맡는 것은 업무적으로도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

개선방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피의자의 인권과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보관이 공보책임자가 되는 방안이다. 공보관이 공표하게 되면 정제된 표현을 통해 객관적인 공보를 가능케 하고, 직접 수사담당자의 불필요한 공명심을 유발하지 않게 하거니와 언론의 불필요한 과열취재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커져 올 수 있을 것이다(신정훈, 2006: 192).

수사에 있어서 공보는 다른 부서의 공보기능과는 달리,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알 권리를 해소함에 못지않게 피의자의 인권도 지켜야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수사부서의 장을 공보책임자로 하는 것은 언론의 입장, 알 권리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공보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공표하거나 승인된 범주를 벗어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왜냐하면, 해당 수사팀에 소속되지 않거나 직무상 감독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속기관 내부의 업무 분장상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공표와 관련해 준수되어야 할 쟁점 혹은 목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화 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징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개심의여부

경찰수사공보에서 피의사실공개에 거의 준하는 제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있다(이병도, 2018: 230).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와 아주 연관된 제도이기도 하다. 이는 국민의 공분을 살만큼의 사건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타당성 여부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 중의 하나가 ‘국민의 알권리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적극 찬성하는 것에 비해서 학계에서는 신상공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견해(박성수, 2009: 15-16), 확고하게 반대하는 견해(이무선, 2010: 242), 제한적으로 한정하는 견해(이병도, 2018: 241; 정철호, 2012: 165; 강동욱, 2009: 161) 등으로 의견이 나뉜다.

신상공개를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적 인정사유를 판단할 때에도 위원회제도를 두어서 그 판단을 거치는 절차를 두어 경찰 자체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제도를 두어 공보 여부 및 공보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자문

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칭 ‘피의사실공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별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사실을 어디까지 공표할 것인지를 제3자가 판단하게 하자는 제안도 있다(중앙일보, 2019.08.07.). 검찰의 경우는 2019년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도입하였다.

3. 언론과 수사담당자와의 접촉제한

경찰관서 출입 기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경찰 조직이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점점 비대, 권한도 커지는 만큼 언론의 감시기능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경찰관서 특히 수사부서의 사무실의 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부적인 감찰기능도 아니고 충분히 다른 수단으로서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수사부서의 사무실은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사건 등 가해자,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곳이라 2차 피해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이다. 또한 수사의 밀행성도 이루어지는 곳이고 각종의 수사 비밀이 있는 곳이므로, 이의 출입은 명확히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 상 금지하는 곳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의 여러 경로 중 하나에 불과한 수사요원에 의한 공표에만 한정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근절을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김진환, 2010: 83-84).

현행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보면, 수사사건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보책임자가 사건담당자로 하여금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사건이 과연 공개하고자 하는 사건인지 아닌지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규정상으로는 명료하게 표현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등을 과연 조화롭게 사건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경찰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접촉을 금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접촉은 피의사실공표로 이어질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수사개입이나 외압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접촉하였다면 언론보도 예상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자 등 언론기관종사자의 피의사실공표죄 공범성립의 문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그 결정 권한은 경찰의 고유권한이고 따라서 인과관계가 성립되기도 힘들다고 하며 언론의 자유의 부당한 제한이나 헌법적 사명 등으로 인해서 공범의 성립을 우려하며 피의사실공표죄의 대항범적 성격으로 인해서 공범성립이 어렵다는 견해들이다.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피의사실을 흘리는 경우는 그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예방책으로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에 앞서 언급한 기자 등의 수사부서출입금지 및 수사담당자와의 담당 사건 관련하여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금번에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을

2021년 1월 1일 자로 개정하면서 ‘제19조 개별적인 언론접촉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VI. 결론

본 연구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있어, 문제점 및 언론보도와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경찰, 기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그룹별 FGI 방식으로 연구한 최초의 시도이며 실무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FGI라는 연구방법의 특성상 조사대상자 수가 적어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과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기 힘들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룹별로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추후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그룹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함께 토의를 진행하여 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동욱, 2009,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한양대학교 한양법학, 26: 145-161.
- 고민수, 2007, “취재의 자유와 알 권리의 관계에 관한 고찰: 공인수탁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미국 헌법연구, 18(2): 407-442.
- 김남석, 2001, “출입 기자단-기자실제도의 형성과정과 현황”, 관훈저널, 여름호: 186-187.
- 김남희, 2016, *알 권리와 국회의원 활동기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배원, 2016, “알 권리의 의의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57(4): 1-30.
- 김재민, 2004, “경찰 피해자수사에 있어서의 제도적 수사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6: 9-45.
- 김재현·임정호, 2019,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환, 2010, “사법개혁의 방향”, 저스티스 통권, 118: 57-146.
- 김효전, 1998, “표현의 자유”, 동아법학, 24: 323-342.
- 문재완, 2020, “경찰수사공보행정규칙과 무죄추정원칙”, 언론과 법, 19(2): 77-113.
- 박선영, 2000,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공법연구, 28(2): 159-178.
- 박성수, 2009,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1-16.
- 박용상, 2002, *표현의 자유*, 서울: 현암사.
-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중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문기·이한울·정정화·정우식·김대근·김정현·허인석·서경원·위성국·이진호·문승태·송민주·유도훈·박상용·이승우. 2019, *피의사실공표죄 연구*, 울산: 울산지방검찰청.
- 성정엽, 1999, “기본권충돌에 대한 헌법이론적 연구”, 공법학연구, 1: 89-110.
- 신정훈, 2006,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법적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8(2): 169-200.
- 심석태, 2006, *언론 보도와 피의사실공표의 한계*, 서울: 대검찰청.
- 이무선, 2010,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39: 223-246.
- 이병도, 2018,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20(1): 225-245.
- 이상호 정호원, 2007, “피의자 인권과 알권리의 조화방안”, 법조언론인클럽편: 1-94.

- 이성대, 2021,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범죄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9(1): 183-210.
- 이승준, 2009, 경찰단계에서의 성폭력사건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 이준일, 2006,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화”, *고려대학교 고려법학*, 47: 161-187.
- 이용식, 2007,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서울대학교 법학*, 48(2): 1-30.
- 이용식, 2010,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판단과 공적 인물 이론”, *경찰학논총*, 5(2): 95-123.
- 이재진, 2004,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재고찰”, *언론과 법*, 3(1): 225-255.
- 임 옹, 2017, *형법각론*, 파주: 법문사.
- 장용근, 2005, “불법도청에 따른 X과일에 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 *고시계*, 50(9): 4-18.
- 장응혁, 2016,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조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황, 2018, *新 헌법입문*, 서울: 박영사.
- 정종섭, 2015, *헌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 정철호, 2012,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156-168.
- 천진호, 200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3(2): 146-185.
- 최병각, 2002, “정당행위와 사회상규”, *형사판례연구*, 10: 114-136.
- 최우정, 2016, *기본권론*, 서울: 준커뮤니케이션즈.
- 최우정, 2020,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법과정책*, 26(3): 137-172.
- 최현선·정윤수·남기범·김은수, 2011, “FGI방법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정책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9-15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형사소송법 제정 자료집*,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병구, 1995,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 서울대학교.
- 한수웅, 2015, *헌법학*, 파주: 법문사.
- 한위수, 2002,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35(5): 131-157.
- 홍성방, 1999,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안암법학*, 9: 1-20.

2. 기타 문헌

강원일보, 1995.04.09.

동아일보, 1989.07.28.

동아일보, 2020.12.17.

매일경제, 2019.06.06.

법률신문, 2019.07.23.

중앙일보, 2020.07.23.

한겨레신문, 1989.07.28.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2헌마425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775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

BVerfGE 30, 201 판결.

BVerfGE 35, 202(225)-Lebach 판결.

Rosenblatt v. Baer, 383 U.S. 75, 85.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네이버 지식백과. 2021.06.15. “서베이 조사(servey research)”.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7578&cid=62841&categoryId=62841>

네이버 지식백과. 2021.06.15. “눈 덩이 효과(snowball effect)”.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5308&cid=43667&categoryId=43667>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agency's publication and press reports

-Focusing on the FGI(Focused Group Interview) investigation on the
police investigation publication-

Kim, Byoung-Chul

[Abstract]

The police's investigation announcement is mainly related to the facts of the suspect, which is prohibited in principle in Article 126 of the Criminal Act, but in reality, it has been mad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Publication Rule on the grounds of the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human rights.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by looking at how the police and the media actually lead to criminal reporting in relation to criminal cases.

The FGI survey method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It is a research method that has the advantage of systematically organizing information on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stakeholders or expert groups in the field. In this study, three police officers, five police administration and law professors, and three police reporters were interviewed in groups to collect qualitative data on system improvement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investigative agency members and officials. As a result of the study, under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media for the right to know, police officers are calling for clarity of the concept and scope because there are many ambiguous aspects in which the criteria for disclosing the suspect are not clear.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edia response window and limit individual contact with media reporters and investigators.

Key-Words: Police investigation, right to know, disclosure of facts of suspicion, police investigation publication rules, FGI.

